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규정〉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0호)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7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개요	1
-------------	---

[김기현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구자근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 검토의견	4
----------------	---

1.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규정(김기현의원안, 구자근의원안)	4
가. 의용소방대 운영·활동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지원범위·경비 구체화(안 제14조 제1항)	9
나.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규정(안 제14조제3항) ...	11
2. 의용소방대원 이무 수행 후 건강검진 및 심리치료 지원(구자근의원안)	16

I. 개 요

【김기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6. 03. 25.

다. 회 부 일 : 2026. 03.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구자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03. 25.

다. 회 부 일 : 2025. 04. 0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규정 (김기현의원안, 구자근의원안)

개정안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김기현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u>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u> ② (생략) ③ <u>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u>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u>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u>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현행	김기현의원안	구자근의원안
	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 의용소방대 개요는 [참고 1] 참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제목개정 2025.8.14.]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제14조제1항),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14조제3항),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6조).

한편, 국가에게는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2항).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됨.

2026년도의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편성액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편성액은 820억 8,500만원이고, 이 중 소집수당이 452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55.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피복비 96억 400만원(전체 예산의 11.7%), 운영비 72억 9,400만원(전체 예산의 8.8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6년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편성 현황3>

(단위: 억원, %)

예산 내역	예산액	비중
계	820.85	100.0
소집수당	452.07	55.07
피복비	96.04	11.70
운영비	72.94	8.89
장학금	47.25	5.76
출장비	46.55	5.67
경연대회	39.00	4.75
장비지원	36.35	4.43
국내연수	17.53	2.14
위탁교육	5.79	0.71
국외연수	6.03	0.73
보상보험	0.96	0.12
재해보상비	0.28	0.03
(비고) 재원 -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료: 소방청)

의용소방대의 사무실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76개의 의용소방대 중 83%인 3,303개의 의용소방대가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서(119안전센터 포함)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는 비율이 46.7%,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무상대여하는 비율이 20.9%로 나타남. 한편, 인천 등 3개 시·도의 일부 의용소방대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각 시도별 의용소방대 예산 상세 내역은 [참고 2] 참조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유 현황>

(2026. 01. 01. 기준)

구 분		대수	%	비고
계		3,978	100.0	
보유	소계	3,303	83.0	
	본서(센터) 내	1,857	46.7	
	공공기관 무상대여	832	20.9	
	컨테이너	250	6.3	
	자체운영 ⁴⁾	186	4.7	
	기타 ⁵⁾	178	4.5	
미보유	소계	675	17.0	

(자료: 소방청)

<시·도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지원 현황>

(2026. 01. 01. 기준)

구분	지원내역	재원	비고
인천	○ 영종서 연합회 사무실 : 年 임차료 : 12백만원 ○ 미추홀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 年 임차료 : 13백만원 ○ 중부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 年 임차료 : 11백만원	지방비	
충남	○ 도 연합회 사무실 : 보증금 : 230백만원	지방비	
경남	○ 도 연합회 사무실 - 전세금 : 260백만(관리비 월 10만원 별도 지원)	지방비	

(자료: 소방청)

4) 마을회관, 시장상가변영회, 관리사무실, 가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음(자료: 소방청)

5) 대학생의용소방대 대학강의실 또는 동아리실 사용, 공원 내 관리사무소 위탁운영, 개인건물 임시사용 등

가. 의용소방대 운영·활동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지원범위·경비 구체화(안 제14조제1항)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구입비, 교육·훈련비, 운영비 등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구자근의원안 제14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부담하는 경비와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현행 법률에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물적·인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는 소방 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제3항),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제14조제1항), 임무수행·교육·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제17조제1항)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은 소방청장 등이 전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개정안 제14조제1항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임.

<현행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관련 규정>

구 분	지원내용	지원주체	관련규정	'26 현황
[의용소방대활동]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		제14조 제1항	
- 소집수당	-임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시·도지사	제15조 제1항	'26:452억원 (전액 시·도 지방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제16조 제1항	
- <u>소방장비</u> ⁶⁾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 대여·사용	시·도지사, 소방서장	제10조 제3항	전부 시·도 지원
- <u>교육·훈련</u> ⁷⁾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 교육, 보건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제13조 제1항	전부 소방청 등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제14조 제1항	
- 사무공간 지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시·도지사	제14조 제3항	-사무실 무상 사용 또는 임차비 지원
- <u>운영비</u>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 지원	시·도지사	제14조 제1항	'26: (전액 시·도 지방비)
- 복장 등	-의용소방대 복장 및 신분증 착용	시·도지사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26: (전액 시·도 지방비)
[재해보상]	임무수행, 교육·훈련으로 질병·부상·사망 시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도지사	제17조 제1항	'26: 2,800만원 (전액 시·도 지방비)

6) 전담 의용소방대가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목록은 [참고 2] 참조

* 참고로, 일반 의용소방대가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없고, 대부분 관할 소방서에서 장비를 구입한 후 일반 의용소방대에 배분함(자료: 소방청).

7)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관련 상세 현황은 [참고 3] 참조

나.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규정 (안 제14조제3항)

개정안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기현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 제14조제3항).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로 확대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이라는 현행법 제14조 제3항의 법문이 포괄적이므로 이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및 공유물품의 무상 양여·사용”으로 구체화·명확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제14조제3항: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원주체	시·도지사 (국가는 직접적인 지원주체 아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공유물품 무상 양여·사용
(사무공간 제공 방식 관련 각 법문 특징)	공유재산을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무공간 임차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가능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가능
(공유물품 제공 관련)	소방장비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3항) (무상 양여 규정 없음)	공유물품의 무상 양여·사용 가능 (공유물품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현행법 제14조제3항이 신설된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조문이 신설될 당시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서 자체도 공간이 부족한데 소방서의 일부 공간을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방서의 공간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지사의 비용 지원을 받아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서 외의 공간에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 조문의 신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⁸⁾.

이에 현행법 제14조제3항의 법문은 필요한 경우에 사무공간 임차 등을 위한 시·도지사의 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한정하여 무상 대부·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원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8) 동 조문과 관련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17740호) 심사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특례의 기본적인 규정방식에 맞추어 법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취지가 시·도지사의 비용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공유재산인 소방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대표발의 의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제안된 법률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음(제427회 국회(인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년 7월 9일) 회의록, 50면, 52면).

기존 지원과의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가도 의용소방대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고(제2조제1항)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제14조제1항) 고려하여 국가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 및 필요성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⁹⁾¹⁰⁾.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10) 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는 국유재산 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안은 공유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¹¹⁾에 이미 의용소방대에게 소방장비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¹²⁾하거나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무상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부” 및 “사용” 용어를 쓰고 있음(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대여”는 대부와 유사어이기는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가. 현금
 - 나. 유가증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현행법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양여(讓與)란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현재도 의용소방대가 소방장비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양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개별법상의 특정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 시 이중지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유물품 양여는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양여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현행 법률(「의용소방대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및 심리치료 지원 (구자근의원안 제14조의2)

개정안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지원이나 심리적 외상 검사·치료 지원을 하도록 하되 시·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건강 보호의 지원)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지원</u> <u>2.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 지원</u> <u>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임무 수행, 교육·훈련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지원과 더불어 재난 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1)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받고(요양보상),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후 완치된 이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며(장애보상), 3)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보상과 유족보상을 받음(장례보상, 유족보상)¹³⁾.

또한, 재난활동 등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국가트라우마 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의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소방병원 이용 시 건강검진비 감면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13)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제도 상세 내용은 [참고 5] 참조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의 종류>

종류	재해보상 요건 및 내역	비고
요양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	
장애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름	
장례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유족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자료: 소방청)

<의용소방대원 건강검진 및 치료 관련 제도 현황>

① 소진관리프로그램

- (추진배경) 재난 대응인력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도 경감을 통한 심리적 회복을 도모
- (운영기관) 국가트라우마센터
- (참여대상) 재난 대응인력(의료진, 경찰 및 소방, 군장병 등 수습 및 복구인력, 정신건강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신청방법)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담당자 개별문의
 -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 (주요내용) 마음건강검사, 개인상담, 소진관리교육, 집단상담 등

※ 2025년도 의용소방대 소진관리프로그램 참여실적

- (참여인원) 대형재난 활동 의용소방대원 69명*
 - * 무안 항공기 참사 및 경상권 산불 활동 의용소방대원
- (프로그램) 집단상담, 예술치료, 치유요가 등

② 소방병원 건강검진

구 분		검면내용			
		외래	입원	건강검진	기타
본인	의용 소방대원	본인 부담금 100% 감면	본인 부담금 50% 감면	- 기본패키지 30% 감면 - 정밀패키지 30% 감면 ※ 그 외 선택검사 감면 없음	- (비) MRI·초음파 50% 감면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지원이나 심리적 외상 검사·치료 지원을 하도록 하되 시·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특히,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제17조) 이는 질병·부상 등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 보상인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건강검진 및 심리적 외상 검사·치료 지원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모든 임무 수행 후 일률적으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으며, 현재도 의용소방대원에게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임무 수행 시 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건강검진 제도 현황>

구 분	소방공무원 ¹⁴⁾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 후 건강검진 여부	- 임무수행 후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는 않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심리적 외상검사 및 치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중양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전 및 치료 지원	- 법률의 근거는 없으나, 의용소방대 소진관리프로그램 운영 중
1인당 연간 출동 횟수(2025년 기준)	163건 ¹⁵⁾	2.97건 ¹⁶⁾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의 운영·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개정안 제14조의2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는 상시 근무체계가 아니므로 정기적 검진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소방공무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무 수행마다 별도의 검진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14)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15) $10,639,732 \text{회} (2025 \text{년 총 출동 횟수}) \div 65,291 \text{명} (\text{총 인원}) = 163 \text{건}$

16) $271,814 \text{회} (2025 \text{년 총 출동 횟수}) \div 91,492 \text{명} (\text{총 인원}) = 2.97 \text{건}$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의용소방대 개요

(자료: 소방청)

■ 의용소방대 정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
-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년 : 65세

■ 소집수당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지원 등 “의용소방대법”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
- ② 그 밖의 교육·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의용소방대 조직

- 조직구성 :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¹⁷⁾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의용소방대 ¹⁸⁾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8)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9개 시·도 3,976개대 91,492명

(2025.12.3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전문·전담
대수(대)	3,976	1,388	1,312	190	1,097
현원(명)	91,492	34,342	30,428	4,770	21,952

○ 2025년도 활동성과 : 271,814회 1,480,877명 활약

구 분	총 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71,814	9,063	1,834	4,815	119,788	23,775	42,311	70,228
인원 (명)	1,480,877	65,173	9,069	25,644	506,466	113,953	218,161	542,411

○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현황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 관	소방서 주관	본부주 관	지방소 방학교	중앙소 방학교	안전 협회	자체 교육	사이버 교육	과제 평가
25 년	횟수 (회)	74,670	19,501	2,362	517	310	7	908	3,304	47,752	9
	인원 (명)	449,749	303,795	59,352	3,607	1,215	10	2,876	58,386	20,426	82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 관	소방서 주관	본부주 관	지방소 방학교	중앙소 방학교	안전 협회	자체 교육	사이버 교육	과제 평가
24 년	횟수 (회)	126,244	20,973	2,026	384	383	4	659	2,338	99,364	113
	인원 (명)	477,037	326,840	58,504	4,482	1,459	9	4,232	50,429	30,965.5	117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 관	소방서 주관	본부주 관	지방소 방학교	중앙소 방학교	안전 협회	자체 교육	사이버 교육	과제 평가
23 년	횟수 (회)	103,178	18,986	2,079	186	367	15	721	1,096	79,686	42
	인원 (명)	426,460	303,143	51,326	2,409	1,522	57	2,223	27,851	37,750	179

참고 2 전남 의용소방대 구비 장비 목록

※자료: 소방청

□ 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전담의용소방대 시설 및 장비기준)

□ 장비목록

구 분	종 류	보유기준
기동장비	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	1대 이상
진압장비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2대 이상
	소방호스(40mm / 65mm)	(10/5)본 이상
	관창, 결합금속구 등	3개 이상
구조장비	사다리	1개 이상
보호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3착 이상

참고 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현황

※자료: 소방청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시간

- 전담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시(연간 24시간)
- 신규입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기본교육 36시간(2년간 / 연 18시간)
-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연 12시간

○ 교육 예산: 금579,151,000원(금오억칠천구백일십오만일천원) / 2026년도 지방비

※ 의용소방대 자체 부담 항목 및 금액: '해당 없음'

○ 교육내용

- 기본교육

교과목(기본교육)	교육내용
화재의 성상	연소이론, 화재 및 소화이론, 화재 시 행동패턴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 옥내·옥외소화전 사용법,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사용법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및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질환) 기본 응급처치(사고)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구조활동 개요, 피난구조장비 사용법 생활안전활동 유형과 활동요령
현장활동 안전관리	안전사고의 개념, 현장활동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사례
소양교육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성인지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용소방대 비위 사례

- 전문교육

교과목(전문교육)	교육내용
화재진압실무	생활 속 화재예방
	화재 대피와 피난, 화재진압이론,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장비의 사용(통신장비 포함)
	특수화재 대응
	산불의 예방과 감시, 산불진압 이론과 실습
현장안전관리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특성
	화재현장, 교통사고 안전관리
	수난사고, 인과사고 안전관리
	소방활동 안전관리지침
구조활동	교통사고와 구조활동
	지진, 특수사고와 구조활동
	인명구조 실습-개인 및 팀단위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대의 유형 및 활동장비, 생활안전활동 실습
구급활동	환자 이송체계 이해
	외상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다수사상자 발생시의 환자분류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소양교육	성인지 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용소방대 비위사례
	리더쉽 이론과 실제, 교수능력 향상

○ 2024년도 교육훈련 현황: 총 126,244회 / 477,038명 교육

구분	안전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횟수(회)	20,973	2,026	384	383	4
인원(명)	326,840	58,504	4,482	1,459	9
구분	소방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횟수(회)	659	2,338	99,364	113	
인원(명)	4,232	50,429	30,966	117	

참고 4 2026년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세부 내역

※자료: 소방청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	재해보상	보상보험
	820.85	452.07	47.25	96.04	0.28	1.02
서울	33.11	22.21	2.37	1.90	—	—
부산	32.14	23.02	1.82	5.20	—	0.01
대구	14.91	6.13	2.10	2.89	—	—
인천	39.88	22.95	3.74	3.89	—	0.02
광주	9.43	3.75	0.77	1.15	—	—
대전	12.30	4.36	0.81	1.58	—	0.16
울산	21.91	12.81	1.54	3.13	—	0.09
세종	7.57	4.89	0.82	0.66	—	0.02
경기	88.76	33.67	4.76	10.25	—	0.01
강원	75.55	30.72	4.53	5.76	—	0.12
충북	48.73	27.17	2.74	4.93	—	—
충남	105.06	54.54	5.31	9.89	0.05	0.23
전북	55.62	39.88	2.41	6.66	0.04	—
전남	69.77	38.44	5.63	11.52	0.04	0.04
경북	116.03	72.62	5.35	16.70	0.08	0.07
경남	65.03	39.78	1.70	6.29	0.05	0.02
제주	16.49	10.39	0.42	2.47	—	—
창원	8.55	4.74	0.42	1.15	—	0.23

구분	장비지원	위탁교육	국내연수	국외연수	경연대회	출장비	운영비
	36.35	5.79	17.53	6.03	39.00	46.55	72.94
서울	－	0.55	1.57	－	1.55	1.68	1.27
부산	－	0.17	－	－	0.33	0.67	0.91
대구	－	0.07	0.02	－	0.24	1.74	1.72
인천	1.12	0.07	0.30	0.99	0.77	3.22	2.81
광주	－	0.34	0.30	0.14	0.95	0.26	1.78
대전	2.55	0.13	－	0.40	1.00	0.82	0.49
울산	0.50	0.29	0.10	－	0.76	1.39	1.31
세종	－	0.13	0.22	－	0.18	0.52	0.13
경기	4.74	1.52	8.44	1.83	4.12	10.75	8.65
강원	6.66	0.20	1.87	－	3.86	10.47	11.35
충북	4.23	0.01	0.59	－	2.21	0.67	6.19
충남	4.42	0.79	1.05	1.16	5.00	1.96	20.65
전북	1.61	0.04	0.30	－	2.73	0.41	1.54
전남	0.09	0.24	0.90	－	5.92	2.86	4.09
경북	4.04	0.25	0.99	1.04	4.93	7.17	2.79
경남	6.27	0.41	0.33	0.23	3.82	1.37	4.76
제주	0.11	0.46	0.55	0.24	0.11	0.05	1.68
창원	－	0.13	－	－	0.51	0.52	0.83

참고 5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8]
- 재해보상 취지: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입는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대원의 생명·신체 보호와 활동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함.
 -
- 재해보상 주체: 시·도지사
- 재해보상 재원 : 시·도 일반회계
- 재해보상 요건: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 재해보상 절차:
 - 대원 부상발생 → 의용소방대 대장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해보상 신청 → 재해보상 확정 → 재해보상금 지급
 - ※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재해보상 절차가 일부 다름
- 재해보상 현황(최근 5년간)

단위: 명, 천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0	309,059	14	17,760	21	35,858	10	37,383	24	27,611
요양보상	8	20,009	13	16,231	21	35,858	10	37,383	24	27,611
장애보상			1	1,529						
장제보상	1	7,050								
유족보상	1	282,000								

○ 재해보상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종류	재해보상 요건 및 내역	보상금 지급기준
요양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애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름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장례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참고 6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개요

(자료: 소방청)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 방안 마련
- ※ '04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작(「산업안전보건법」 근거) → '12년 「소방공무원 복지법」 마련
- (법적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 주요내용(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5장)

○ (실시대상)

-전국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적용) 및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대원(헬기 조종사, 정비사), 인명구조원 훈련사, 상황실 관제요원 등 현장출동 및 교대근무 수행

○ (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구분		진단시기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정기건강진단	연 1회
	수시건강진단	위험 노출 혹은 작업 관련 증상 발생 시
정밀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정기, 수시) 후 직업성 관련 증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건강진단 항목) 소방공무원 多빈도 질환(심뇌혈관, 근골격계, 교대근무&암발생 등) 및 감염성 질환 포함

○ (1인당 지원 예산) 20~58만원(소방청 및 각 시·도소방본부 별 상이)

○ 2024년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현황 * 2025년도 취합 중

정기검진 인원	총 검진비용	비고 (1인당 평균 검진비용)
65,839명	25,853,188,550원	359,300원